

##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사무처리 규정

제정	2005. 6. 8	문화재청	예규 제 38호
개정	2009. 8.28	문화재청	예규 제 75호
개정	2009. 9.24	문화재청	예규 제 78호
개정	2009.12.14	문화재청	예규 제 79호
전부개정	2011. 6. 3	문화재청	예규 제100호
폐지	2012. 8.29	문화재청	예규 제111호
재발령	2012. 8.28	문화재청	예규 제111호
전부개정	2014. 7. 7	문화재청	예규 제139호

### 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호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아래의 서훈 및 표창(이하 '포상'이라고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상훈법에 의한 문화훈장, 문화포장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제 2 조(주관) 이 포상은 문화재청이 주관한다.

제 3 조(포상공고 및 포상일) ① 문화재청장은 포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상일 3개월 이전에 공고한다.

1. 포상부문
2. 포상내용
3. 포상대상자 추천
4. 기타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문화유산현장 제정 공포일(12월 8일)에 수여한다.

제 4 조(포상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 추천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개인(본인 포함) 및 추천위원회가 할 수 있다.

②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와 추천된 자의 공적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장 문화유산보호유공 포상

제 5 조(포상대상) ① 국적과 생존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문화유산 보호 및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공적은 동일 부문에서 다음 각호의 수공실적을 말한다.

1. 문화훈장 : 15년이상
2. 문화포장 : 10년이상
3. 표창 : 5년이상

③ 재포상 금지, 추천제한 등에 관하여는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다.

제 6 조(포상종류 및 기준 등) ① 문화재청장은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에 의거 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 등에 공적이 현저한 자를 선정하여 그 공적에 따라 다음 각호를 관계기관에 추천한다.

1. 금관문화훈장(1등급)
2. 은관문화훈장(2등급)
3. 보관문화훈장(3등급)
4. 옥관문화훈장(4등급)
5. 화관문화훈장(5등급)
6. 문화포장
7. 대통령표창
8. 국무총리표창

② 포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골고루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통합하여 선정할 수 있다.

1. 보존·관리 부문 : 문화재의 원형보존·관리와 문화재의 훼손·멸실 예방, 보호 등에 특별한 공헌이 있는 개인, 단체
  2. 학술·연구 부문 : 문화재의 학술적 과학적 조사·연구를 통하여 문화재의 보존, 관리, 활용, 홍보, 교육 등에 특별한 공헌이 있는 개인, 단체
  3. 봉사·활용 부문 : 문화유산 현장에서의 각종 봉사활동과 문화재의 활용·홍보 및 문화재 관련 교육 등에 특별한 공헌이 있는 개인, 단체
- ③ 포상인원과 등급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포상을 받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 7 조(부상의 귀속) 포상을 받은 자가 수여식이 있는 후 6월 이내에 부상을 수령치 않을 경우 또는 포상을 받은 자의 희망에 의해 반환된 경우에는 그 부상은 국고로 귀속된다.

제 8 조(부상의 승계) 포상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금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상속 순위에 따라 승계된다.

### 제3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 9 조(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포상대상자 추천과 관련한 다음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포상대상자 보완 추천
2. 기타 문화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추천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매년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 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 3.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언론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③ 추천위원은 포상대상자로 추천될 수 없다.

④ 추천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추천위원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 각 2인 이상으로 통합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장 1인을 두며, 추천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추천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④ 추천위원회의 간사는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과장으로 한다.

제11조(회의)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포상대상자 추천) 추천위원회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학술·연구, 봉사·활용 등의 분야에 공적이 우수한 포상대상자를 각 부문별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문화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 제4장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포상대상자 결정

제13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포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다음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 1. 포상대상자의 공적심의
- 2. 기타 문화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매년 위촉한다.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 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 3.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언론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③ 포상대상자로 추천된 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3개 부문별 심사위원회를 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부문별로 각 3명 이상의 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 1인을 두며,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 또는 과장으로 한다.

제15조(회의)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포상대상자 심사추천) 심사위원회는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여 포상 규모의 2배수를 선정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문화재청장에게 추천한다.

제17조(포상대상자 결정) 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포상대상자 중에서 문화재청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선정, 관계기관에 추천한다.

#### 제5장 보 칙

제18조(준용) 본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및 정부포상업무지침 등을 준용한다.

제19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3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05.6.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8.28.>

이 예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9.24.>

이 규정은 2009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14>

이 예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6.3>

이 예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8.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예규의 폐지) ① 문화유산보호서훈 및 대한민국문화유산상 사무처리규정(문화재청 예규 제100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14.7.7>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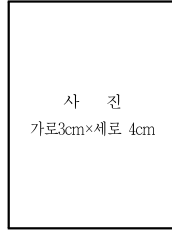
[별지 제1호 서식]

# 추천서

(훈격 : ) ※ '문화훈장, '대통령표창 등 중 1개 기재

## 1. 포상대상자

- 성 명(한자) :
- 국 적 :
- 주민등록번호 : ※ 고인, 외국인은 생년월일 기재
- 현 주 소 :
- 소 속 :
- 직 위 :
- 연 락 처 : (주택) (H.P)



## 2. 추천 부문 :

※ 보존·관리, 학술·연구, 봉사·활용 중 택 1

## 3. 학력·경력 및 상벌사항

학 력

연 월 일	학 력 사 항	비 고
~		
~		
~		

경 력

연 월 일	경 력 사 항	비 고
~		
~		
~		

상벌(훈장·포장·표창·벌 순으로 기재)

연 월 일	상 벌 사 항	비 고
~		
~		
~		

## 4. 공적 사항

- 수공기간 : 년 월
- 주요 공적요지 (200자 내외)

세부 공적내용

공 적 사 항
- 분량에 제한 없이 여러 쪽으로 작성 가능(최소 A4 2장이상) -

※ 공적조서 기재요령

- 수공기간(훈장 15년이상, 포상 10년이상, 표창 5년이상)의 공적사항을 상세히 작성
- 공적 내용은 해당분야 공헌 및 활동, 저서(역서 포함), 논문 등을 기재
- 단체의 경우, 성명란에 단체명을 명시하고 3번항도 단체의 이력과 포상 기록을 기재
- 공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각 1부씩 첨부

위와 같이 문화유산보호유공 포상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서명)

연락처

문 화 재 청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추천서(추천위원회)**

훈격 :

부 문	수상 대상자			비 고
	소속 또는 직위	성명	주요공적	
보존·관리부문				
학술·연구부문				
봉사·활용부문				

위 사람(단체)을 문화유산보호유공 포상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장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간 사 :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추천서(심사위원회)**

훈격 :

부 문	수상 대상자				비 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보존·관리부문					
학술·연구부문					
봉사·활용부문					

위 사람(단체)을 문화유산보호유공 포상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장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간 사 : (서명)